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May 09, 2024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한 공정거래 소식지를 다시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4. 15.	• (이슈)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힘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4. 16.	• (이슈)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 출범식 개최 4. 17.	• (이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 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
김문성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4. 19.	• (이슈) 공정위 비상임위원 신규 위촉 • (주요내용) 김문성 변호사가 2024. 4. 22.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됨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4. 23.	• (이슈)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위 입장 표명 • (주요내용)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 24.	• (이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정위,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4. 29.	• (이슈)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함.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우려 평가방식,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간이심사 대상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
II. 주요 소식	
공정위원장,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참석 4. 15.	• (이슈) 한기정 공정위원장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참석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제4회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하여 올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협약 평가 기준 개정 등 연성 규범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 2023년도 가맹사업현황 분석, 발표 4. 18.	• (이슈) 2023년도 가맹사업현황 분석, 발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년도 가맹사업현황을 분석, 발표하였으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정위 부위원장, AI시장 심층 분석 및 새 감시틀 도입 계획 4. 18.	• (이슈) AI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시 • (주요내용)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내 AI정책보고서 발간 등 AI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선행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계획
정부, 물가 잡는데 공정위 감시 대폭 강화 4. 24.	• (이슈)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 공정위 시장 감시 기능 대폭 강화 • (주요내용) 정부는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美 FTC, 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 4. 24.	• (이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비경쟁 계약'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 • (주요내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년 4월 후반부)

I. 보도자료

1.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4. 15.)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함
 -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2024. 2. 9. 시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면제 가능(법 제130조 제3항 후단 신설),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② 공시기간의 재설정, ③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신규 기업집단 지정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함 (시행령 개정)
 - **(공시기간의 재설정)**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 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공시기간을 설정함.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함 (고시 개정)
 -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함

2.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4. 16.)

-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공시매뉴얼을 개정함
-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함.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함
 - 주식지급거래 약정: 스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estricted Stock Unit,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 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부여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 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함
 - 기존에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으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 개선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함
-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024. 8. 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

3. 공정위,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4. 17.)

- 공정위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함
-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 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되어 공정위는 이를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임
-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이후 모바일상품권 관련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하였음. 해당 TF는 공정위 관련 부서들로 구성되는데,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임

4. 김문성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4. 19.)

- 김문성 변호사가 2024. 4. 22.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됨
 -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음
 - 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냈음

5. 공정위,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4. 23.)

- 공정위는 4. 2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i)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ii)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는 현재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6.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 24.)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 (i)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ii)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삭제하였으며, (iii)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iv)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함
 -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함

7. 공정위,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4. 29.)

- 공정위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됨
 - 금번 개정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던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새롭게 심사기준에 반영함
- **(시장획정)**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법을 명시하고, 다면시장 획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혁신시장 획정 예시를 보강하였음
 -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유형의 사업자들의 경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대체를 기준으로 한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양면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면 이용자 수가 다른 면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는 면별로 별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면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활동(연구개발 등)이 활발한 사업자간 결합의 경우, 이들이 가격경쟁이 아닌 혁신경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혁신시장’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제한성 우려 평가방식)**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경쟁제한성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방식을 정비하였음
 -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함.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서비스가 보유한 데이터 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

가 수요가 유발(네트워크 효과)되어 결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쟁제한 우려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매출액에 기반한 점유율 산정이 곤란하므로, 서비스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의 대체변수를 활용하여 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무료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에서는 가격 인상 우려보다,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 폐해 우려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혼합결합에서 끼워팔기 또는 묶어팔기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고, 별개 상품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으로 자리잡는 경우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개정 심사 기준은 이러한 가능성이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 **(효율성 증대효과)**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추가하여,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평가되도록 하였음
 -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 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간이심사 대상)**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15일 내에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를 함)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함
 -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사업부문을 혼합결합하는 경우로서, 결합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부문이 직전년도 기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가 됨(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한편, 이와 같이 일반심사가 되려면 인수되는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기준 이상인 사업자여야 함
 -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음
-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관계부처, 규제개혁 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음

II. 주요 소식

1. 공정위원장,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참석 (4. 15.)

-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15일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함
 - 유통 상생 대회는 민간 자원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행사임
- 중국 플랫폼의 약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정부의 책임 있는 상생의 노력을 주문하는 언급이 있었으며, 상생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유통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과 판로,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유통업체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좋은 제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올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협약 평가 기준 개정 등 연성 규범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2. 공정위, 2023년도 가맹사업현황 분석, 발표 (4. 18.)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도 가맹사업현황을 분석, 발표하였음
-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022년 대비 8.3%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증가 추세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3. 공정위 부위원장, AI시장 심층 분석 및 새 감시틀 도입 계획 (4. 18.)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바뀐 기업들의 투자 양상에 따라 시장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업결합 심사에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공정위도 AI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심층 연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 부위원장은 경쟁법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국내 AI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경직된 규제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국내 생태계가 형성되지도 못한 채 혁신의 싹이 사라질 수도 있는바 균형 잡힌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함
- 공정위는 연내 AI 정책보고서 발간에 집중하고 있음

4. 정부, 물가 잡는데 공정위 감시 대폭 강화 (4. 24.)

-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간담회에는 공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음
-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 정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할 것이며,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5. 美 FTC, 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 (4. 24.)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23일 도입하기로 함. 새로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비경쟁 계약 금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비경쟁 계약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이 정신을 막으며, 노동 시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 내 약 3000만 명의 근로자가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FTC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기업에 피해를 주는 규정을 제정했다면서 소송을 예고함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17조 제2항), (ii)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안 제17조 제4항), (iii)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안 제17조 제3항 제4호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